

의안번호	제527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7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박재주·김현문·이정범

박병찬·박용규·유상용

이양섭 의원

1. 제안 이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운영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관련 규정 (안 제6조)

마. 학생 대상 교육 실시 규정 (안 제7조)

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지원 규정 (안 제8조)

사. 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보급

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장애이해 체험관 운영비 (보조공학기기 구입, 학생 이동 차량 운행 임차비 등)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비
-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

3. 관련 조문

- 안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제2항, 안 제8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보급
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가.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나. 전제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 이해 교육의 대상을 각급 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따라 예산 소요액은 증감될 수 있음.

2) 교직원, 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3) 지출은 사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지속 발생

다. 비용추계의 결과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56,000 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52,000 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라. 추계비용의 상세내역

1) 체험관 운영비: 24,000천원

- 2024년: 1,000천원 × 1실 × 12월 = 12,000천원

- 2025년: 1,000천원 × 2실 × 12월 = 24,000천원

※ 2025년부터 원격 장애이해교육 추가 편성

2) 보조공학기기: 30,000천원

- 2,000천원 × 15종 = 30,000천원

3) 콘텐츠 제작관리비: 16,000천원

- 2024년: 10,000천원 × 1종 = 10,000천원

- 2025년: 4,000원 × 20교 × 200명 = 16,000천원

4) 전문 강사비: 4,000천원

- 200천원 × 1명 × 2시간 × 10회 = 4,000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스템 구축· 운영	체험관 운영 (충북특수교육원)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보조공학기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콘텐츠제작관리비	10,000	16,000	16,000	16,000	16,000	74,000
		전문강사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소계						
	소계(b)	56,000	74,000	74,000	74,000	74,000		
□ 총 비용(b-a)			56,000	74,000	74,000	74,000	74,000	352,000